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목 차>

1.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기준
2. 의료적성검사결과 확인 요건 강화
3. 의료적성검사 재검사기간 회차 제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박재웅
	담당부서 (과)	물류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근오		연락처	044-201-4021
	과장	박진호		이메일	fiend70@mail.g o.kr

2025. 01. 1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기준		
	2.규제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6조, 별표4		
	3.위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0~2025.03.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9) 14.9 → (‘20) 15.7 → (‘21) 16.6 → (‘22) 17.5 → (‘23) 18.4 －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 택배·배달 등으로 인력 유출 및 청년 세대의 3D 업종 기피 등으로 운수업계 고령화* 문제는 보다 심각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제도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검사기준 강화 추진		
	7.규제내용	○ 혈압 및 혈당 항목의 검사결과가 추적관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 6개월 이내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제출한 결과가 적합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추적관리 대상 기준 1. 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 160mmHg 미만, (이완기) 90mmHg 이상 100mmHg 미만 2. 당화혈색소 : (혈액검사) 6.5% 이상 9% 미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td><td>5.7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5.7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5.7만명								
	9.규제목표	○ 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적격성 검사 제도 개선 －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운수종사자는 자발적으로 혈압 및 혈당 등 건강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일반적으로 혈압 및 혈당이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해 기준 강화로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보호되므로 편익발생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판정기준) ①·② (생 략) <u><신 설></u>			제6조(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혈압 및 혈당 항목의 검사결과가</u> <u>별표 4에 따른 추적관리 대상 기준</u> <u>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u> <u>따라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u> <u>한 결과가 적합판정기준을 충족하</u> <u>지 않으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u> <u>다.</u>		
[별표4] <u>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u>			[별표4] <u>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제6조 관련)</u>		
② 신체계측(키/몸 무게)		(적부판정대상이 아님)	② 신체계측		키, 몸무게
③ 혈압	혈압측정	<u>적합판정 기준</u>	③ 혈압	혈압측정	<u>적합판정 기준</u>
		(수축기) 160mmHg <u>미만</u> (이완기) 100mmHg <u>미만</u>			<u>추적관리 대상 기준</u> (수축기) 140mmHg <u>이상</u> 160mmHg <u>미만</u> (이완기) 90mmHg 이상 100mmHg <u>미만</u>
④ 혈당	식전혈당 측정	(생 략)	④ 혈당	식전혈 당측정	(현행과 같음)
	당화혈색 소 (HbA1c)	(혈액검사) 9% 미만		당화혈 색소 (HbA1 c)	<u>적합판정정기 준</u> (혈액검사) 9% 미만
주) 1.2. (생 략) 3.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 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u>의료기</u>			주) 1.2. (현행과 같음) 3. ----- ----- <u>건강검</u>		

현 행	개 정 안
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의 <u>검사결과서 유효기간</u>은 의료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u>최근6개월내</u>에 검사(또는 검진) 받은 것에 한함.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u>최근 1년</u> 이내 검사(건강검진) 받은 것도 가능 <신 설>	<u>진결과통보서</u>----- ----- <u>건강검진결과</u> <u>통보서 유효기간</u>----- ----- <u>최근 3개월내</u>----- ----- ----- ----- <u>6개월</u> ----- ----- 4. <u>혈압 및 혈당검사 추적관리 대상자는 최근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u>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9) 14.9 → ('20) 15.7 → ('21) 16.6 → ('22) 17.5 → ('23) 18.4

- 특히, 열악한 근로여건, 택배·배달 등으로 인력 유출 및 청년 세대의 3D 업종 기피 등으로 운수업계 고령화* 문제는 보다 심각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제도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등 검사기준 강화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현행 제도 유지(실효성 논란)
규제대안	대안명	화물차운전자 의료적성검사
	내용	○ 화물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적성검사 혈압 및 혈당 항목에 대한 추적관리 기준을 도입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현행 규제 유지로 사업용 화물 운전자의 부담 경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
규제대안	고령운전자의 안전관리 강화로 교통사고의 예방	혈압 및 혈당 등 추적관리 항목 결과 주기적 제출로 인한 불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화물업계 및 지자체	'24.7.24, '24.9.12.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공제조합	'24.8.16, '24.8.29.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업계 종사자	'24.10.11.-10.22. 4회, 권역별설명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고령운전자의 비율(24%) 및 사고율*이 높음에도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 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백명당 사고건수('22,명) : (65세 미만) 2.6, (65~69세) 3.7, (70~74세) 4.4, (75~79세) 5.1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적성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 우려가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만 추적관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 (혈압) 140~159/90~99 → 1기 고혈압, (당화혈색소) 6.5% 이상 → 당뇨병 진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대상은 화물자동차 고령운수종사자이며, 불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혈압 및 혈당 등 건강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④ 대상 업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② 차등화 대상 결정 - 의료적성검사는 65세 이상 고령운수종사자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부만 차등화를 적용할 수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대상 아님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고용시 보다 건강한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해당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의료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괄적 규정 적용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의료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고령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괄적 규정 적용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추적관리 대상을 신설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미해당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1년 또는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피규제가 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추적관리 대상항목인 혈압과 혈당은 운전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므로 피규제자는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위탁사무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재정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는 운전 적격성(신체·인지) 확인을 위해 정기적 자격유지검사(공단) 또는 의료적성검사(병·의원) 수검·통과 필요
 - * (검사주기) 매 3년(65~69세), 매 1년(70세 이상)
 -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년),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년),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년)
-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24%) 및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 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
 - * 백명당 사고건수(22 명) : (65세 미만) 2.6, (65~69세) 3.7, (70~74세) 4.4, (75~79세) 5.1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 *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고령운전자 적격성 검사제도 개선방안 추진 경과 >

-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22.7~'23.12)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포함(5.20)
- 버스·택시·화물업계 및 지자체 대상 개선방안 의견수렴(7.24, 9.12)
- 교통 및 운전자격 적격성 검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8.7, 9.24, 10.2, 10.16)
-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개선방안 검토회의(8.16, 8.29)
- 권역별(수도·충청·경상·전라권)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자연합회 설명회(4회, 10.11~10.22)

2. 향후 평가계획

- 동 고시안 제16조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설정을 통해 3년간 제도 운영 후 실효성을 판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혈압 및 혈당 항목 추적관리 도입은 운전중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한 것으로
- 동 규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 동 규제 도입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의료적성검사결과 확인 요건 강화		
	2.규제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8조 제3항		
	3.위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0~2025.03.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적성검사의 부실·부정검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 피검자 요청으로 무제한 반복 수검 및 부정한 검사결과서를 발급 등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택시·화물업 고령 운수종사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해 병·의원 지정제, 혈압·혈당 항목 추적관리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혈압, 혈당, 시기능)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의료적성검사 제도의 형해화 우려		
	7.규제내용	○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 종류 및 유효기한 강화 -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 인정 - 고령자의 건강변화를 고려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대체 서류 유효기간을 단축(70세 이상: 6개월→3개월, 65세 이상~70세 미만: 1년→6개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5.7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65세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5.7만명
	9.규제목표	○ 화물차 고령운전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본인 및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 － 대체 서류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건강검진 결과서로 제한되어 신뢰도 및 적시성 확보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운수종사자가 별도 사유로 실시한 검진과 의료적성검사 수검 주기가 인접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제한(강화)하는 것으로, 고령 화물차 운수종사자에게 의무화된 의료적성검사 외 추가적인 검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님 ○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부실·부정검사로부터 의료적성검사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감소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보호됨에 따른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해당없음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종합판정표)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적성 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내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또는 검진)한 검사결과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최근 1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1. <u>건강검진결과통보서</u> 2. <u>혈압 검진결과서</u> 3. <u>혈당 검진결과서</u> 4. <u>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u>	제8조(종합판정표) ①·② (생 략) ③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적성검사의 부실·부정검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 피검자 요청으로 무제한 반복 수검 및 부정한 검사결과서를 발급 등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택시·화물업 고령 운수종사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해 병·의원 지정제, 혈압·혈당 항목 추적관리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혈압, 혈당, 시기능)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의료적성검사 제도의 형해화 우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의료적정검사 대체 서류로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혈압 검진결과서, 3.혈당 검진결과서, 4.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를 인정
규제대안	대안명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 종류 및 유효기한 강화
	내용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 인정하며, 고령자의 건강변화를 고려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대체 서류 유효기간을 단축 (70세 이상: 6개월→3개월, 65세 이상~70세 미만: 1년→6개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혈압, 혈당, 시기능을 별도로 검사한 경우 의료적성검사 중 해당항목을 대체 가능	의료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에서 부실·부정검사를 통한 대체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고령화에 따라 급변하는 건강상태를 고려한 운전적격성 관리 미흡
규제대안	대체 서류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는 건강검진 결과서로 제한 되어 신뢰도 및 적시성 확보 가능	최근 혈압, 혈당, 시기능을 별도로 검사한 이력이 있더라도, 의료적성검사로 검사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화물업계 및 지자체	'24.7.24, '24.9.12.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공제조합	'24.8.16, '24.8.29.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업계 종사자	'24.10.11.-10.22. 4회, 권역별설명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화물차 고령운전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본인 및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운수종사자가 별도 사유*로 실시한 검진과 의료적성검사 수검 주기가 인접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제한(강화)하는 것으로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건강 관리를 위해 혈압, 혈당, 시기능을 검사한 경우

-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의무화된 의료적성검사 외 추가적인 검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 국민의 안전 확보와 부실·부정검사로부터 의료적성검사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강화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대상은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이며, 불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적성검사 중 일부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일부 제한하는 것임
④ 대상 업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② 차등화 대상 결정 -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부만 차등화를 적용할 수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대상 아님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고용 시 보다 건강한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해당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해당없
네거티브 리스트		의료적성검사 일부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에 미해당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1년 또는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운수종사자가 별도 사유로 실시한 검진과 의료적성검사 수검 주기가 인접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제한(강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위탁사무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의료적성검사제도 포함)를 운영 중에 있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재정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는 운전 적격성(신체·인지) 확인을 위해 정기적 자격유지검사(공단) 또는 의료적성검사(병·의원) 수검·통과 필요
 - * (검사주기) 매 3년(65~69세), 매 1년(70세 이상)
 -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년),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년),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년)
-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24%) 및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 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
 - * 백명당 사고건수(22 명) : (65세 미만) 2.6, (65~69세) 3.7, (70~74세) 4.4, (75~79세) 5.1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 *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고령운전자 적격성 검사제도 개선방안 추진 경과 >

-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22.7~'23.12)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포함(5.20)
- 버스·택시·화물업계 및 지자체 대상 개선방안 의견수렴(7.24, 9.12)
- 교통 및 운전자격 적격성 검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8.7, 9.24, 10.2, 10.16)
-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개선방안 검토회의(8.16, 8.29)
- 권역별(수도·충청·경상·전라권)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자연합회 설명회(4회, 10.11~10.22)

2. 향후 평가계획

- 동 고시안 제16조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설정을 통해 3년간 제도 운영 후 실효성을 판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전 적격성을 검사하기 위해 수검토록 하고있는 의료적성검사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규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의료적성검사 재검사기간 회차 제한		
	2.규제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3.위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0~2025.03.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실효성 저조에 대한 문제 제기</p> <p>– 높은 합격률(99.9%)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수종사자를 가려내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 발생</p> <p>* “합격률 99% 등 유명무실한 자격검사 기준” (서울 `24.7.9, 연합뉴스 `24.7.4, MBC `24.7.3) – 부적합자도 14일마다 무제한 반복 수검 가능하여 검사 내용의 반복 숙달을 통해 의료적성검사의 적합 판정* 가능 * 검사 회차별 부적합률 : (최초) 1.40%, (2회) 0.68% (3회) 0.64% (4회) 0.64% (5회 이상) 0.62% ○ 이에, 의료적성검사 항목 중 인지평가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고,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3회 이상 탈락(사고 위험군)한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전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제한 필요		
	7.규제내용	○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기간 연장 및 횟수 제한 – 고령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3회차 검사(2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14일→30일)		

		-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4회차 검사(3회차 재검사)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고령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5.7만명)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고령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td><td>5.7만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고령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5.7만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고령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5.7만명								
	9.규제목표	○ 고령운전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본인 및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 - 의료적성검사에 대해 부적합자가 반복 숙달을 통해 적합자로 판정되는 것을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신체능력과 함께 인지능력이 운수업에 종사하기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평가를 단기간(30일 이내)에 무제한적으로 반복 수검할 경우 피검자의 인지능력이 저조하더라도, 반복 숙달(암기)을 통해 의료적성검사의 적합 판정이 가능하여 평가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됨 ○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추세가 점증되고 있으며, 피검자의 검사비용 증가 등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제한기간을 통한 변별력·실효성 확보에 따른 편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사기간 등) <신 설>	제10조(재검사기간 등) ① <u>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18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는 전체 종사자의 24%로, 저출산·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점증 전망

* 평균연령: (임금근로자) 43.8세 (버스) 53.9세 (법인택시) 60.4세 (개인택시) 64.0세, (화물) 56.4세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적성검사의 변별력·실효성 저조에 대한 문제 제기

- 높은 합격률(99.9%)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수종사자를 가려내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 발생

* "합격률 99% 등 유명무실한 자격검사 기준"(서울 '24.7.9, 연합 '24.7.4, MBC '24.7.3)

- 부적합자도 14일마다 무제한 반복 수검 가능하여 검사 내용의 반복 숙달을 통해 의료적성검사의 적합 판정* 가능

* 검사 회차별 부적합률 : (최초) 1.40% (2회) 0.68% (3회) 0.64% (4회) 0.64% (5회 이상) 0.62%

- 이에, 의료적성검사 항목 중 인지평가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고,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3회 이상 탈락(사고 위험군)한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전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제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 현행유지안
	내용	○ 고령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는 무제한적으로 반복검사 가능
규제대안	대안명	○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기간 연장 및 횟수 제한

	내용	○ 고령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3회차 검사(2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14일→30일) ○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4회차 검사(3회차 재검사)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자격유지검사 보다 의료적성검사를 수검을 희망하는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편의성 확보	무제한적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및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로 인지능력 저하 등에 대한 변별력 결여
규제대안	의료적성검사 반복 재검으로 인한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여, 인지능력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운전 전격성 검사 가능	재검사 기한 연장(3회차 검사부터)으로 화물차 운행에 제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화물업계 및 지자체	'24.7.24, '24.9.12.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공제조합	'24.8.16, '24.8.29. 간담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업계 종사자	'24.10.11.-10.22. 4회, 권역별설명회	대부분 찬성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고령운전자가 수검하는 의료적성검사 반복 숙달(인지평가 항목)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고 위험군(3회 이상 탈락)에 대해서는 신규검사 수준의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본인 및 국민의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신체능력과 함께 인지능력이 운수업에 종사하기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인지평가를 단기간(30일 이내)에 무제한적으로 반복 수검할 경우 피검자의 인지능력이 저조하더라도, 반복 숙달(암기)을 통해 의료적성검사의 적합 판정이 가능하여 평가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됨
- 반복 숙달을 통한 학습효과 배제를 위해서는 잠재적 기억의 보존 기간인 한 달 이후에 재검사토록 하는 제한기간 필요
-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추세가 점증되고 있으며, 피검자의 검사비용 증가 등이 없음을 감안할 때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제한기간을 통한 변별력·실효성 확보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피규제대상은 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이며, 불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제한기간 연장 등에 관한 것으로 중소기업 규제부담과 관련없음
④ 대상 업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 화물차 운수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② 차등화 대상 결정 -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부만 차등화를 적용할 수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대상 아님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고용 시 보다 건강한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친화적 규제설계에 해당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의료적성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네거 티브 리스트 미해당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1년 또는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격유지검사 대신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중 1% 미만의 신체 및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피규제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재검사 기간을 제한(연장)하는 것으로 운전자 본인의 안전 확보 및 영업 유지 등을 위해 피규제자는 규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적성검사 3회차 이상의 재검사 시 부적합률은 0.64% 미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위탁사무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의료적성검사제도 포함)를 운영 중에 있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재정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고령 운수종사자(65세 이상)는 운전 적격성(신체·인지) 확인을 위해 정기적 자격유지검사(공단) 또는 의료적성검사(병·의원) 수검·통과 필요
 - * (검사주기) 매 3년(65~69세), 매 1년(70세 이상)
 - ** (제도도입) 버스 자격유지(16년), 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년), 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년)
-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24%) 및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성 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
 - * 백명당 사고건수(22 명) : (65세 미만) 2.6, (65~69세) 3.7, (70~74세) 4.4, (75~79세) 5.1
- 최근 시청역 교통사고('24.7.1) 등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제기
 - *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부실 실태 지적('23 국정감사 맹성규·서일준 의원)
- 이에,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를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 적격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고령운전자 적격성 검사제도 개선방안 추진 경과 >

-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제도개선 연구용역('22.7~'23.12)
-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포함(5.20)
- 버스·택시·화물업계 및 지자체 대상 개선방안 의견수렴(7.24, 9.12)
- 교통 및 운전자격 적격성 검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8.7, 9.24, 10.2, 10.16)
-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개선방안 검토회의(8.16, 8.29)
- 권역별(수도·충청·경상·전라권)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자연합회 설명회(4회, 10.11~10.22)

2. 향후 평가계획

- 동 고시안 제16조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설정을 통해 3년간 제도 운영 후 실효성을 판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전 적격성을 검사하기 위해 수검토록 하고있는 의료적성검사에 대해 부적합자가 반복 숙달을 통해 적합자로 판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사의 변별력·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동 규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 도입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